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3. 22 선고 2021가단319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경환

피 고 1. B

2. C

3. D

4. E

5. F

6. G

피고 1, 2, 3, 5, 6의 소송대리인 E

변 론 종 결 2021. 11. 16.

판 결 선 고 2022. 3.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H 사이에 2020. 1. 8.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들은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H에 대하여 2015. 11. 5.자 대여금 30,853,969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H의 배우자 I은 2011. 10. 6. 사망하였다. 그 상속인으로는 H, 피고들 및 망 J의 대습상속인인 K, L, M, N가 있다.

다. 피고들은 I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0. 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접수 제6648호로 2011. 10.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취소권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접수 제6648호로 2011. 10.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등기원인일자에 상속재산 분할협약이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고,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 K, L, M, N 및 피고들은 2020. 1. 8.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작성한 사실,

이에 기하여 위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처분문서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된 2020. 1. 8.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2020. 1. 8.로부터 5년의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H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1항).

다. 살피건대, 갑 제2, 5, 6, 7, 20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은 농지개혁 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을 분배받아 1959년 상환을 완료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H은 1932년생으로 1983. 5. 25. 전 배우자와 사별한 후 1986. 10. 29. I과 혼인한 사실, H의 자녀는 없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H의 상속분 가액은 11,011,235원[= (331㎡ × 18,900원 + 1,431㎡ × 18,100원 + 1,440㎡ × 21,000원) × 3/17, 원 단위 미만 버림]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O, P, Q은 I이 사망한 이후 H에게 차임을 지급하여 왔고, 그 액수는 합계 연 2,000,000원(= O 200,000원 + P 550,000원 + Q 1,250,000원)인 사실, H은 문맹인데, R가 H 명의의 2015. 11. 5.자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고, H의 대여금 채무에 대한 이자는 2020년 8월까지 정상적으로 지급된 사실, 원고는 2021년에 H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1. 10. 6.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와 같이 ① I은 H과 혼인하기 훨씬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대부분을

취득하였고, 혼인 당시 H의 나이는 이미 50대 중반이었으므로, H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에 기여한 바는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자녀 없는 계모가 상속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대신 그 차임을 지급받아 생활비에 충당하는 것은 상속재산 분할협약에서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내용인 점,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인데(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등 참조), H은 상속재산 분할협약 당시 상속분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액수의 차임을 이미 수취하였던 점, ④ 문맹인 H이 대출거래약정서 작성 당시에 그 내용을 인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2020년 9월 이전까지 원고가 대여금의 지급을 독촉한 바도 없으므로, H은 상속재산 분할협약 당시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H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 분할협약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욱